



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

-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*를 D-SIB 및 D-SIFI로 지정

* (지주) KB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<5개> (은행)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 <5개>

금융위원회는 7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*)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**)로 선정하였다.

* D-SIB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) : 「은행법」, 「금융지주회사법」 등에 따라 선정하며,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

** D-SIFI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 : 「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하며,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

【 '24년도 D-SIB 및 D-SIFI 선정 결과】

구 분	선정 결과
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(D-SIB)	(은행지주회사)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 (은행)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
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(D-SIFI)	D-SIB 선정 은행지주회사·은행과 동일

[선정 배경]

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(FSB) 및 바젤위원회(BCBS)가 권고한 제도이다. 이에 국내에는 '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까지 매년 D-SIB을 선정하고 있으며, 선정된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*를 부과하고 있다.

* (16년) 0.25% → (17년) 0.50% → (18년) 0.75% → (19년 이후 ~ 현재) 1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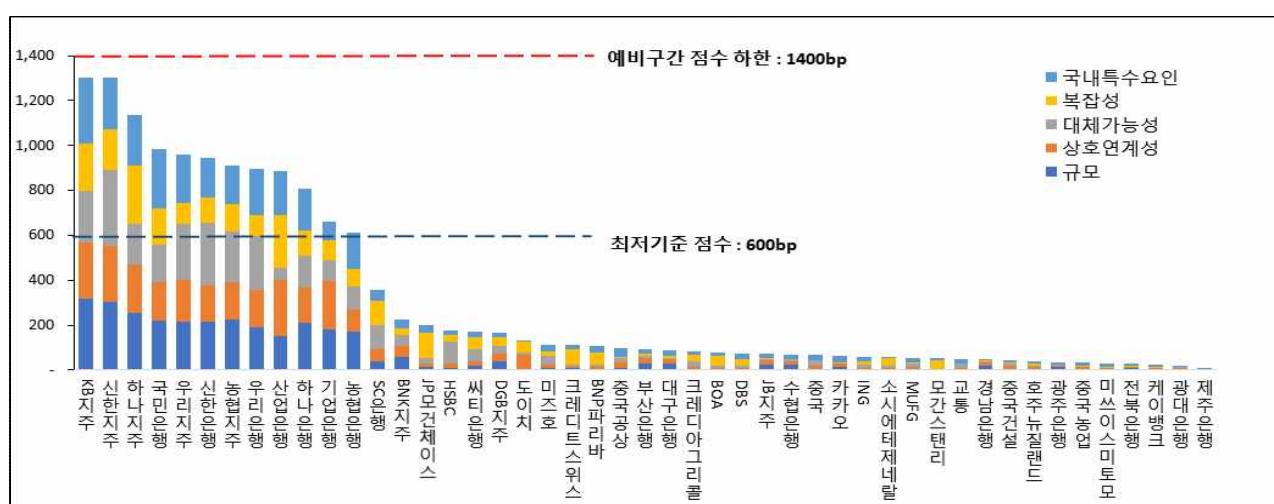
또한, ‘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(금산법)」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)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.

[선정 결과]

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,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, 상호연계성,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·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(금융체계상 중요도)를 평가하였다.

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,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-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(단위: bp)



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,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. (전년과 동일)

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.

아울러, D-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는 「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금산법)」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)으로도 선정*하였다.

* (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)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

[향후 계획]

금번 결정으로 D-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'24년 중 1%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. 다만 '24년도 D-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, 금번 D-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, '22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'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'24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(%)

		기본 적립비율	자본보전 완충자본 ¹⁾	경기대응 완충자본 ²⁾	D-SIB 추가자본	적립필요 자본
보통주비율	'24.4.30일 까지	4.5	+2.5	+0.0	+1.0	8.0
	'24.5.1일 이후			+1.0		
기본자본비율	'24.4.30일 까지	6.0	+2.5	+0.0	+1.0	9.0
	'24.5.1일 이후			+1.0		
총자본비율	'24.4.30일 까지	8.0	+2.5	+0.0	+1.0	9.5
	'24.5.1일 이후			+1.0		

주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.5%의 완충자본 부과(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)

2) '24.5.1부터 1% 부과 예정 (현재 0%)

또한 금융위원회는 '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)로 선정된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,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. D-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혁 (02-2100-2952)
	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	책임자	팀장	나혜영 (02-2100-2591)
		담당자	사무관	배인정 (02-2100-2592)
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장	진선영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종현 (02-2100-2914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장	김준환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장	명기영 (02-3145-8060)
		담당자	반장	심서연 (02-3145-8035)



참 고

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평가 개요

(평가대상) 국내 은행지주회사, 은행 및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부실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

○ 수출입은행, 토스뱅크 및 총자산 5조원 미만 외은지점은 규정상 예외 조항^{*}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* ①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(은행업감독규정 §94)
 - ②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 (규정 §102)
 - ③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금융체계상 중요은행 관련 규정을 미적용 (규정 부칙 제2015-40호 §3)

(평가부문) 총 5개 평가부문, 12개^{*} 평가지표로 중요도를 측정

평가 부문	D-SIB 평가지표	가중치
1. 규모(20%)	총익스포져	20.0%
2. 상호연계성(20%)	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증권 발행규모	6.7% 6.7% 6.7%
3. 대체가능성(20%)	원화결제규모 외화결제규모 보호예수자산 유가증권 거래규모 (신설)	6.7% 6.7% 3.33% 3.33%
4. 복잡성(20%)	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	10.0% 10.0%
5. 국내 특수요인(20%)	외화부채 가계대출	10.0% 10.0%
종 합	5개 부문 12개 지표	100.0%

* '22년까지는 11개 평가지표로 측정하였으며, '23년부터 대체가능성의 하위 항목으로 1개 지표 신설 (유가증권 거래규모)

(평가점수) 개별 은행·은행지주회사의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('시장점유율' 개념, 총점 10,000점)

○ 총점 600점 이상을 D-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

평가점수 산정방식

- 개별 '은행'(A)의 세부지표(i)별 평가점수(X_{iA}) = $\frac{x_{iA}}{\sum x_{ij}} \times 10000$
- 개별 '은행'(A)의 금융체계상 중요도(SI_A) = $\sum_{(\omega_i \neq X_{iA})} \omega_i$
- x_{ij} : j '은행'의 세부지표 i 에 해당하는 값
- ω_i : 세부지표 i 에 대한 가중치